



“설비공사업체의 업역을 확대하자”②

—무면허 업체의 불법시공
단속으로 업역확대—



무면허 시공업자의 단속은 곧 설비공사업체의 업역을 확대하는 길

본 협회가 올 한햇동안 설비공사업체의 업역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펴기로 함에 따라 설비공사업체의 업역을 침해하고 있는 무면허 시공업자의 단속을 활발히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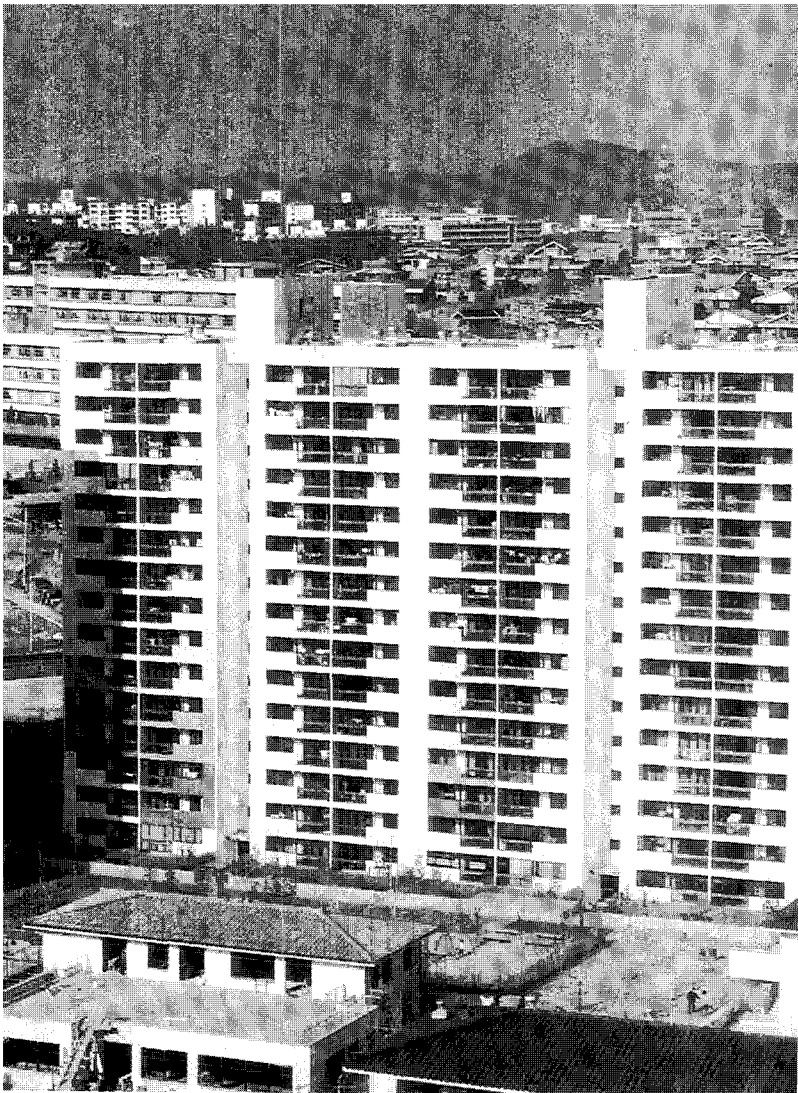
서울시지부를 비롯 각 시·도지부는 무면허 시공업체의 적발 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

발히 벌이기로 했다.

각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무면허 시공업체의 단속에 나선 부산지부는 90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총 28건을 적발, 고발 2건, 사과문 게재 10건, 시정 각서 징수 6건 계도처리 10건 등의 결과를 보였다.

부산지부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경북지부도 지난해 구미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33건을 적발, 위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전북지부도 지난해 33건을 적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하는 등 경고조치를 취했고 광주·전남지부는 22건을 적발, 14개 업체는 설비공사업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도록 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고발 준비중에 있는 등 지난해는 무면허 업체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선에서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나서 위법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오이다.



본협회는 강력한 단속으로 무면허업체의 불법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

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지부와 충북지부의 입장은 타 시·도 지부와는 사뭇 다르다.

어느 시·도지부나 좁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위법조치를 취하기 어렵지만 충북지부의 경우 지부 회원사 간의 단합을 우선으로 꼽아 무면허 업체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

대구시지부는 무면허 업체의 시공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지역이 협소한 까닭도 있으나 99%의 회원사가 시공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

무면허 업체의 불법시공은 사회문제까지 초래케 해

본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중인 무면허 업체의 불법시공 적발은 협회 설립 3년째인 91년도에는 어느정도 기틀을 잡아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회 본협회 상임이사는 “관계법령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공의 존

경남지부도 지난해 무면허 시공업자의 불법시공 현장을 확인한 결과 81건을 적발, 위반 13건, 수사의뢰 12건, 사과문 징수 1건, 건설업법 위반 입건 8건, 수사중 2건 등의 결과를 얻은바 있다.

각 시·도지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시공 단속에 나설 계획

지난해 일부 시·도 지부가 무면허 시공업체의 적발에 활발한

활동을 보고 있었으며 인천지부, 대전·충남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제주지부 등도 무면허 시공업체 적발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키로 하고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 설비공사업체의 업역을 확대하는 한편 설비공사업체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 지부가 무면허 시공업체 적발에 활발한 활동 및 계획

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불법시공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본협회가 강경조치를 취해 불법시공을 근절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 일것”이라고 강조한다.

모 회원사는 “설비공사업체가 건설업법에 의해 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시공업체들은 법망을 피해 시공한 뒤 세금까지 포탈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 무면허 시공업체의 불법영업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무면허 업체의 불법 시공은 설비공사업체에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다. 무면허 업체는 대부분 부실공사로 하자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할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공한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기관도 없으므로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돼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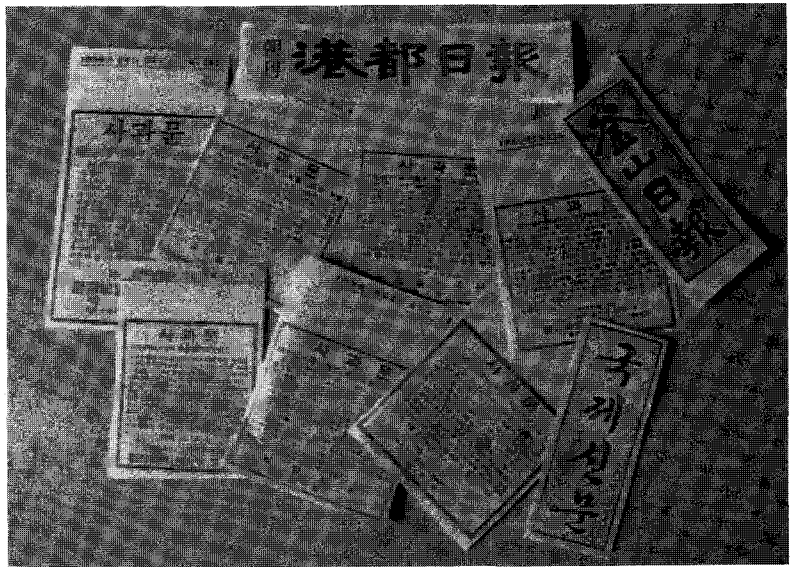
이처럼 무면허 업체의 불법시공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므로 이의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설비공사업체를 대변해주는 법적 근거자료이다.

●설비공사업의 법적 자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3(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①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

무면허 업체의 불법시공은 설비공사업체에 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 하자보수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돼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



설업면허를 받은 자(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 건설업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설업 시행령 제4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

한 공사”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중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5백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78. 3. 14 대통령령 제8888호 전문개정) 중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제2 조관련)

대분류	소분류	내 용
일반공사	1. 토목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관개수로·하천·택질 조성·관로·발전(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를 제외한다)·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공사·인공어초공사등 국토개발·환경정비 및 사회의 각종재해의 방호를 위한 제반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되, 건축공사 및 특수공사를 제외한다)
	2. 건축공사	주거용·사무실용·농업용·공업용·상업용건물과 병원·학교·극장·교회·사찰·체육관등 공중의 용에 제공되는 건물, 창고·격납고등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개축·재축·증축·이축·유지보수 또는 철거하는 공사(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를 포함하되,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등
특수공사	1. 철강재 설치공사	철강재료 교량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등의 시설물을 신축·개축·재축·이축·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철물의 제작·조립 및 설치 또는 제거하는 공사와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2. 준설공사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 및 항만시설 설치등 토목공사
	3.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활주로를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공사를 포함한다)와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역청재 덧씌우기공사, 다만,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의 경우 2차선미만의 도로포장공사를 제외한다.
	4. 조경공사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녹지시설·휴게시설·운동시설·유익시설·교외시설·편익시설·보건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공사
전문공사	1. 의장공사	실내의장공사(제12호 내지 제19호의 공사에서 전용하는 재료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장공사를 제외한다.)·목공사·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등
	2. 토공사	철도공사·성토공사·굴착공사·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등
	3. 미장·방수공	일반미장공사·다듬기공사·미장뿔칠공사·줄눈공사·타일붙임공사·미장물탈공사·방수공사·에폭시공사·방습공

본협회, 올 한해동안
설비공사업계의
영업확대를 위해
무면허 시공업자의
불법시공을 강력히 단속키로.

사	사·도막공사등
4. 석공사	돌쌓기공사····석재공사·굴포장공사등
5.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도장뺀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랑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등
6. 조적공사	블록쌓기공사·벽돌쌓기공사·벽돌붙임공사·축노공사등
7. 비계공사	일반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말뚝공사·발판가설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샌드파일공사·빔운반거상공사·굴뚝공사등
8. 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경금속제창호설치공사·복재창호설치공사·유리공사등
9. 지붕·판금공사	기와지붕공사·스레이트지붕공사·금속판지붕공사·지붕단열공사·판금공사·피브이시가공부착공사·지붕장식공사·흙통공사등
10.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등바리공사 각종 특수 콘크리트공사등
11. 철물공사	철골조립공사·교량상부철강공사·철탑공사·갑문등수문설치공사·탱크공사·셔터설치공사기타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받침시설등 철물로서 시공하는 공사등
12. 설비공사	가스배관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급탕설비공사·냉난방설비공사(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 지재설치를 제외한다)·열절연공사·방음공사·공기조화설비공사·주방설비공사·수세식변소설비공사·승강기설치공사·플랜트내기기설치공사·환기설비공사·집진기공사·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차단기공사등
13. 상·하수도설비공사	취수기기설치공사·정수기기설치공사·송배수기기설치공사·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상하수도동용수판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상수도관세척공사·각종변류이형관설치공사등
14. 보링·그라우팅공사	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등
15. 철도궤도공사	궤공공사·레일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도상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토공사(재해응급 조치를 위한 것에 한한다)·궤도임시받침공사·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건널목보관공사등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3에 의거,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16. 포장 유지보수공사	역청재 등으로 포장된 도로(2차선 미만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제외한다)등 소파수선공사의 덧씌우기공사(덧씌우는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의 원도급 공사를 포함한다)·표면처리공사등
17. 수중공사	수중구조물기초공사·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콘크리트공사·수중관부설공사등
18.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식재공사·진디등 지피식물입히기공사등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연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야외의자 및 파고라설치공사등

설비공사업체는 건설업법에 의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하는 하자보수 보증제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1.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3. 다세대 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전문개정 90. 7. 16)

●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관계법 자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5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령 제1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공종구분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 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공사 및 조

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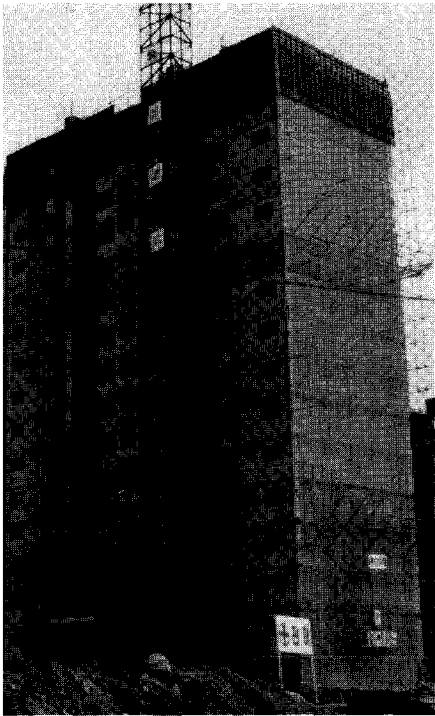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령 제12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



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5년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의 공사:4년

3. 관개수로·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 등의 공사:3년

4.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 다)·일반건축·부지정지·조경 시설물설치·조경식재(나무의 높이가 4m 이상 이거나 흉고 지름이 10cm 이상인 수목류의 식재의 경우에 한한다)등의 공사:2년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공사:1년

②령 제1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1조 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회계예규 2200.04-123.1980.3.10)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하자보수 완료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사 준공검사일로부터 계산한다.

2.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를 당해 계약조건에서 분리 시공을 인정한 경우로서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완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 날을 그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가산일로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난방공사도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해야 마땅

이상은 설비공사업계의 법적 영역 및 하자담보책임과 그 기간에 대한 것이다.

보통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은 민법 제670조(목적물에서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일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다.)에 의거, 10년으로 보고 있으나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경제기획원의 고시에 의거, 6개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설비공사업계는 관행상

예산회계법에 의거,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하자보수 보증 기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체가 보수를 해 주었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 되며,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이행치 않았을 때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보수를 청한 요 청일로부터 2년이 된다.

위의 관계 법령 및 법규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3에 의거 '공동주택의 위생 및 냉난방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해야 하는 것과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법으로 미루어 볼 때 단독주택 난방공사의 공사금액이 대부분 5백만원 이상이 되므로 단독주택의 난방공사 역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적법한 시공이라 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무면허 업체의 불법 시공 단속에 대한 활발한 활동은 설비공사업계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대에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모든 회원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택난방공사는 시공능력과 하자보증이 최우선 설비전문 면허업체에 맡겨 주십시오

정부가 공인 한국내 유일의 설비공사면허업체

대한설비공사협회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일정자격(자본금 1억원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5인이상)을 갖춘 국내 설비전문업체들로 구성된 정부 공인단체입니다. 1,300여개의 회원사들은 가장 우수한 시공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모든 설비공사를 완벽하게 해내는 시공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일반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사무실, 오피스텔 등 대소규모 빌딩의 모든 설비공사에 대한 처음 시공에서부터 준공후의 하자보수까지 건물주와 설비업체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드리는 교량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 가격, 신뢰받는 기술력 철저한 사후관리

일반적인 난방공사는 3백여가지의 부품이 소요되는 등 고도의 기술을 지닌 전문인만이 해낼수 있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영세한 무면허업자들이 얇은 경험에만 의존하여 시공하므로서 부실공사를 남게 되는 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결과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중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설비공사협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정부공인단체이며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지금 주택난방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은 즉시 저희 협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후회없는 시공결과를 약속해 드립니다.

대한설비공사협회의 회원사들은 완벽한 시공을 약속합니다.

- 가정주택 난방공사
- 냉난방설비공사
- 급탕설비공사
- 수세식변소설비공사
- 주방설비공사
- 욕내급배수설비공사
- 가스배관공사
- 환기설비공사
- 공기조화설비공사
- 열절연공사
- 방음공사
- 승강기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플랜트기설비공사
- 양수기 배수기설치공사
- 열풍건조설비공사

정부가 인정한 설비공사 전문회사의 단체—

대한설비공사협회

TEL : (02)243-7639, 214-5410

특별법에 의한 설비전문업체의 하자책임 보증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

TEL : (02)549-4490~7

대한설비공사협회 시·도지부 사무국

- 서울지부(02)249-4876, 243-7638~9 ● 부산지부(051)464-4754~5 ● 대구지부(053)628-8936
- 인천지부(032)434-4609 ● 광주·전남지부(062)527-3787, 0955 ● 대전·충남지부(042)627-1771
- 경기지부(0331)7-4178~9 ● 강원지부(0361)55-5044 ● 충북지부(0431)55-8361 ● 전북지부(0652)85-0076
- 경북지부(0562)81-6640 ● 경남지부(0551)88-4818~9 ● 제주지부(064)42-5106